

**무배당 오로지 연금을 위한 달러연금보험  
(보증비용부과형)**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 사업방법서

(사업 방법서 별지)

## 무배당 오로지 연금을 위한 달러연금보험(보증비용부과형)

### 1. 보험종목의 명칭

- 무배당 오로지 연금을 위한 달러연금보험(보증비용부과형)(보증형)
- 무배당 오로지 연금을 위한 달러연금보험(미보증형)

###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

#### 가. 보험기간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지급 개시 후	종신연금형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상속연금형	
보험기간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 보험가입시점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가입된다. 다만, 연금지급 개시 전에 다른 연금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나.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연금지급 개시나이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연금지급 개시나이
월납	5년납	0세~70세	(가입나이+20세)~90세
월납	7년납	0세~70세	(가입나이+20세)~90세
월납	10년납	0세~70세	(가입나이+20세)~90세

※ 연금지급 개시나이는 45세를 최저한도로 한다.

※ 납입기간 별 최소거치기간(납입기간 완료 후 연금지급 개시나이까지의 최소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최소 거치 기간
5년납	15년
7년납	13년
10년납	10년

###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된다.

##### 가. 기본보험료

계약시점에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매월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하며 기본보험료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납입기간	기본보험료 최저한도
5년납	200달러
7년납	150달러
10년납	100달러

##### 나. 추가납입보험료

- 1) 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지급 개시나이-2)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 2)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는 총 납입한도는 납입총액(기본보험료 × 12 × 납입기간)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 3)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 월까지의 납입한 기본보험료(선납보험료 포함)의 200%에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 4) 연간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매년 기본보험료의 200%이다.

#####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요약]

구 분	납 입 한 도
총납입한도	기본보험료 × 12 × 납입기간 × 200%
연간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기본보험료 × 12 × 200%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기본보험료 × 경과월수 + 선납보험료)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5)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납입보험료로 한다. 다만, 상기의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 6) 3), 4)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를 축소할 수 있고, 그 경우는 미(美)국고채수익률이 이 계약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5년이내 연복리 1.0%, 5년초과 연복리 0.7%)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며, 미(美)국고채수익률은 미(美)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가 공시하는 10년만기 국고채권

의 수익률로 한다.

## 6.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최대 6개월 이내의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으며,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나. '가'의 경우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월계약 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으로 이체하며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비용(보증형에 한함)을 차감한다. 이 경우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부분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 가산하며, 「5.나.추가납입보험료」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다.

## 7. 해지계약의 부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나.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8.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 8.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 9.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1회당 인출신청시점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다. 인출 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달러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인출금액은 100달러 이상 10달러 단위로 하며,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월계약해당일 기준 1개월 동안 2회까지 인출할 수 있으며,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총 인출금액(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 및 생활자금인출금액의 합계)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의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총 인출금액(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 및 생활자금인출금액의 합계)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한다.

## 10. 생활자금인출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생활자금인출서비스는 계약자적립액 인출의 일환으로 다음에 정한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 ① 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 ② 신청시점이 「연금지급 개시일 - 2년」 이전인 경우

나. 계약자가 생활자금인출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부터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다’항에 따라 인출금액을 계약자가 선택한 주기마다 자동지급 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부가하지 않는다. 계약자는 생활자금인출 주기를 매월, 3개월, 6개월 또는 매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다. 생활자금인출금액은 생활자금 지급시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지급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에만 지급한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지급시점 이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합계에서 각 지급시점 이전까지의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 및 생활자금인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생활자금인출서비스는 중지된다.

- ① 계약자가 생활자금인출서비스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
- ② 생활자금인출서비스에 의해 생활자금이 자동지급되는 동안 별도로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을 신청한 경우
- ③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한 경우
- ④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의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총 인출금액(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 및 생활자금인출금액의 합계)이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20%를 초과한 경우
- ⑤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총 인출금액(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 및 생활자금인출금액의 합계)이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50%를 초과한 경우
- ⑥ 생활자금인출금액이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초과 하는 경우

마. 생활자금인출액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부족한 금액은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한다.

바. 은행계좌 등 계약자 정보변경으로 생활자금인출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해당일에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생활자금인출금액은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되지 않는다. 이후 지급이 가능하게 된 때, 기존에 지급하기로 한 생활자금인출금액에 그 경과된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의 계약자적립액과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의 연금계약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나.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의 세부 내용은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외화보험을 기준으로 산출 및 적용한다.

다.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공시이율은 변경될 수 있다.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 계약자적립액은 해당 월의 공시이율로 계산된다. 회사는 객관적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 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times \alpha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1 - \alpha)$$

(1)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①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alpha) = \frac{A/B+C}{A+C}$$

$$\text{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alpha) = 1 - \frac{A/B+C}{A+C}$$

- A : 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보험료수입

②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③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④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직전년도 보험료수입」은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⑥ 「직전년도 보험료수입」은 1년간 받은 보험료를 말한다.

⑦ 다만, ④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의 ⑤ 내지 ⑥의 자료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공시기

준이율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를 100%로 하여 산출한다.

(2) 객관적 외부지표금리

① 객관적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미국채(30년) 수익률 × 미국채 가중치(β 1) + 미회사채(무보증 10년, A) 수익률 × 미회사채 가중치(β 2) + 미국채(1년) 수익률 × 미국채(1년) 가중치(β 3) + 미국채(3개월) 수익률 × 미국채(3개월) 가중치(β 4)
--

- ②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미국채(30년), 미회사채(무보증 10년, A) 및 미국채(1년) 수익률과 미국채(3개월) 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직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 ④ 미국채 가중치(β 1), 미회사채 가중치(β 2), 미국채(1년) 가중치(β 3), 미국채(3개월) 가중치(β 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직전년도 평균 잔고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각 가중치는 25%로 할 수 있다.

$\text{미국채 가중치}(\beta 1) = \frac{a}{a+b+c+d}$ $\text{미회사채 가중치}(\beta 2) = \frac{b}{a+b+c+d}$ $\text{미국채(1년) 가중치}(\beta 3) = \frac{c}{a+b+c+d}$ $\text{미국채(3개월) 가중치}(\beta 4) = \frac{d}{a+b+c+d}$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a는 회사가 보유한 미국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단, 미국채(1년), 미국채(3개월) 제외</li><li>- b는 회사가 보유한 미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li><li>- c는 회사가 보유한 미국채(1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li><li>- d는 회사가 보유한 미국채(3개월)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li><li>-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li><li>-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li></ul>
---

(3) 운용자산이익률

①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수익률 - 투자지출률
---------------------------

②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보험금융수익 제외)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 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보험금융비용 제외)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text{운용자산수익율} = \frac{(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times 100}{[\text{직전 13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text{투자지출율} = \frac{(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times 100}{[\text{직전 13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③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4)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투자리스크 전체를 부담하는 자산이 존재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자산 및 관련 투자영업수익은 재보험계약을 출재한 보험회사가 아닌 이를 인수한 보험회사의 공시기준이율 산출을 위한 운용자산이익률 계산에 포함한다.

라. '다'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다'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 이상으로 적용한다.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바.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연복리 1.0%, 5년초과 연복리 0.7%로 한다.

사. 세부적인 공시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관련 회사내부지침을 따른다.

##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 또는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나. 계약자는 '가'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라.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며, 보험계약대출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을 적용한다.

## 13.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14.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 가. 특별계정의 운용

- (1)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적립액은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여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한다.
- (2)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특별계정 운용대상 적립보험료는 영업보험료(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에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나.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 (1) 특별계정 자산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평가한다.

#### 15. 특별계정과 일반계정 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이체사유가 매월 1일부터 15일 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 마지막 날까지, 16일부터 당월 마지막 날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 달 15일까지)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다만, 각 이체일이 영업일 이외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체일 직후의 영업일에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

- (1) 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료의 납입 등의 이체 사유가 있는 경우
- (2)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이체사유가 매월 1일부터 15일 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 마지막 날까지, 16일부터 당월 마지막 날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 달 15일까지)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1) 보험금 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
- (2)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 (3)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
- (4) 보장계약의 순보험료, 유지비 등의 이체 사유가 있는 경우
- (5)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가’ 및 ‘나’에 있어서 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기간 경과 이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16. 계약자적립액의 계산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17.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에 관한 사항(보증형에 한함)

공시이율로 부리한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과 관계없이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시점에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보증으로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시점”마다 각 시점까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며,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시점”에 보험료가 연체중인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한 날을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시점”으로 한다.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금액 =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기준금액 x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비율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기준금액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시점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비율		
		5년납	7년납	10년납
보증시점 전일까지의 “기준 기본보험료”	계약일로부터 7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100%	100%	100%
	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130%	127%	120%
	min(연금개시시점, 계약일로부터 30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비율 + (min(연금개시전 보험기간, 30년)-10년)) x 2.5%		

※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시점”마다 각 시점까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시점”은 해당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 하며,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 기준금액”은 해당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날까지의 “기준 기본보험료”를 말한다.

※ 다만,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인출한 경우,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금액”은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인출 수수료 포함) 및 공시이율에 따라 해당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에 적립되는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해당 중도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여도 보증금액이 원복되지 않습니다.

## 18.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나. “가.”에도 불구하고 약관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약관 제35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경우,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인출 또는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p><b>인출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b></p> <p>= 인출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액 (인출수수료 포함)</p>
---

**19. 기준 기본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보증형에 한함)**

- 가. “기준 기본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각 시점별로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나. 선납보험료는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기준 기본보험료”로 포함된다.
- 다. “가.”에도 불구하고 약관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약관 제35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경우,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인출 또는 감액 이후 납입된 기본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p><b>인출 후 “기준 기본보험료”</b></p> <p>= 인출 전 “기준 기본보험료”</p>
<p><b>감액 후 “기준 기본보험료”</b></p> <p>= <math>\frac{\text{감액 전 “기준 기본보험료”}}{\text{감액 전 기본보험료}} \times \text{감액 후 기본보험료}</math></p>

**20. 기타**

- 가.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대면채널로 한다.
- 나. 기준통화에 관한 사항
  - 이 보험계약에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 등의 지급,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등에 사용되는 통화는 미(美)합중국통화로 하며, 그 단위는 “달러”로 표기한다.
- 다. 회사는 상품명칭 및 보험종목의 명칭 앞뒤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단, 은행 등 보험대리점(금융기관보험대리점 포함)의 명칭은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 등에 기재할 수 있다.
- 라.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마. 부가 가능한 특약에 관한 사항

1)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 적용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이 보험의 보험기간 중에 연금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을 통하여 전환해준다. 이 경우 환산기준율 및 기준환율은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 및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에 따른다.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아래 금액(이하 '대상금액')에 대하여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li> <li>•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노후행복자금 적립액</li> </ul> |
|---|

②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의 전환 신청이 가능한 계약은 다음과 같다.

- |   |
|---|
| <p><b>&lt;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일부터 7년이 경과한 계약 중 전환 신청 당시의 주계약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큰 계약</li> <li>• 전환 신청 당시의 주계약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계약</li> </ul> <p><b>&lt;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 신청 당시의 노후행복자금 적립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계약</li> </ul> |
|---|

③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은 주보험 가입할 때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적용한다. 다만, 장기간병자 관련 위험률은 연금 전환 당시에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위험률을 적용한다.

④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의 전환할 때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전환 가능나이 및 연금지급개시나이는 달라질 수 있다.

⑤ 연금지급형태 중 장기간병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은 연금전환일로 한다.

⑥ 연금지급형태 중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⑦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의 전환할 때 주계약 전체 해약환급금의 일부를 부분 연금전환할 수 있다.

2)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 및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은 주계약에 부가되며,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보험계약대출 및 계약자적립액 인출 등을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3) 「무배당 달러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 적용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이 보험의 보험기간 중에 연금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무배당 달러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을 통하여 전환해준다. 계약의 전환은 주계약의 해약

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아래 금액(이하 '대상금액')에 대하여 「무배당 달러연금전환 특약\_(가입시점)」으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li><li>•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노후행복자금 적립액</li></ul> |
|--|

- ② 「무배당 달러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의 전환 신청이 가능한 계약은 다음과 같다.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 계약일부터 7년이 경과한 계약 중 전환 신청 당시의 주계약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큰 계약
- 전환 신청 당시의 주계약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이 10,000달러 이상인 계약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 전환 신청 당시의 노후행복자금 적립액이 10,000달러 이상인 계약

- ③ 「무배당 달러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은 주보험 가입할 때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적용한다. 다만, 장기간병자 관련 위험률은 연금 전환 당시에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위험률을 적용한다.
- ④ 「무배당 달러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의 전환할 때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전환 가능나이 및 연금지급개시나이는 달라질 수 있다.
- ⑤ 연금지급형태 중 장기간병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은 연금전환일로 한다.
- ⑥ 연금지급형태 중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 ⑦ 「무배당 달러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의 전환할 때 주계약 전체 해약환급금의 일부를 부분 연금전환할 수 있다.

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제도 비교 설명에 관한 사항

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저축성보험 신규가입과 추가납입제도의 비교 설명내용을 “생명보험 상품공시 시행세칙”에 따라 안내자료에 기재하여 운영한다.

사. 추가납입보험료의 자동이체 서비스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납입 보험료에 대해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생명표의 개정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한다.